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곽향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9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곽향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규남,
김성준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
박성연, 박춘선, 소영철,
송도호, 신복자, 윤기섭,
윤영희, 이봉준, 이상욱,
이숙자, 이영실, 채수지,
최진혁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혜택을 시 전역으로 확산되고, 교통소외지역 거주민, 사회적 약자(교통약자 등)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여건임
- 또한,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차고지 확보가 어려움에 있어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(버스)도 공영차고지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운송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 이외 자치구 등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(안 제19조)
- 나. 자율주행자동차도 공영차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마련(안 제20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자동차관리법,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정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자율주행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”를 “자치구, 시 출연·출자기관,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”로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공영차고지 사용 허가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발전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<u>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9조(재정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자치구, 시 출연·출자기관, 자율주행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</u> ----- ----- -----.
<신설>	제20조의2(공영차고지 사용 허가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발전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(재정지원)의 재정지원대상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[참고] 2024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19조	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	1,127,253

※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(재정지원)의 재정지원대상을 추가함(자치구, 시 출연·출자기관)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현재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